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1
------------	------

발의연월일 : 2017. 6. 16.

발의자 : 문미옥 · 고용진 · 윤종오

김정우 · 신용현 · 박정

이원욱 · 신경민 · 김병관

홍의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으로 정하고 있음.

200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의 제정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되었고, 2015년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이 설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교환경교육의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간 환경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